

# 김포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

의안 번호	제3093호
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2022. 10. 4.  
제출자 황성석 의원  
김현주 의원

## 1. 심사경과

- 본 안건은 2022년 10월 4일 황성석 의원(대표발의), 김현주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.

## 2. 제안이유

- 이 조례는 공공기관이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상공인 상품의 우선구매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임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정의, 적용범위 (안 제1조~제3조)
- 나. 적용대상 기관,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(안 제4조~제5조)
- 다. 구매 촉진을 위한 협조요청(안 제6조)
- 라. 발주 정보 수집 및 제공에 관한 사항 (안 제7조)
- 마. 포상에 관한 사항 (안 제8조)
- 바. 공공구매 실무협의회에 관한 사항 (안 제9조)
- 사. 협의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(안 제10조)
- 아.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 (안 제11조)

## 4. 검토의견

- 본 안건은 김포시 공공기관이 상품을 구매하는 데 있어, 관내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및 농·축·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한 가공식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,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나아가 지역 내 생산·유통·소비 등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목표로 김포시에서 추진 중인 '김포시 푸드플랜'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됨.